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대전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김원지  
전화 042-470-4040 / 팩스 042-470-4240

## 보도자료

2023. 12. 7.(목)

### 제목 **임장될 뻔했던 9년전 보이스피싱 조직 미제 사건 해결**

#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·방식, 수사경위·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(부장검사 조재철)는 동일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범죄임에도 23개의 개별 사건으로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미제 처리되었던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여 범죄조직의 전모를 규명하고 조직원 6명을 범인으로 특정하여 '23.11.29. 일괄 기소 하였습니다.
- 검찰은 단발성 보이스피싱 사건을 송치받은 후 조직규모와 범행수법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,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(KICS)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, '14.12.경부터 '18.5.경까지 전국 18개 검찰청에서 미제 처리된 23건의 사건들이 동일조직의 소행임을 확인하고 전부 재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.
- 수사결과, 검찰은 위 사건들이 모두 태국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했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인 일명 '최사장 조직'의 범행인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.
  - 6명의 조직원들이 총 41명의 피해자들에게 캐피탈 직원 등을 사칭하며 약 5억원을 편취한 것을 추가로 밝혔고,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신청 등으로 피해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였음
- 앞으로도 검찰은 서민의 돈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고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.

# I

##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### 1. 피고인 ※ 피고인들 모두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수형 중

- A○○(남, 35세, 무직) 등 6명

### 2. 공소사실 요지

-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인 일명 '최사장 조직'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, '14.경부터 '18.경까지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'콜센터' 사무실 등지에서, 총 41명의 피해자들에게 ㉠ 1차 상담원은 B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'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'고 설명하면서 개인정보를 확보하고, ㉡ 2차 상담원은 B금융기관 본사를 사칭하며 대출 심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하며, ㉢ 3차 상담원은 피해자의 기존 대출이 있는 C금융기관의 연락처를 안내하고, ㉣ 4차 상담원은 C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[사기]

# II

## 수사경과

- '23. 6.~7. 경찰, A○○ 등 4명 사건 송치
- '23. 10. 4. 대전지검에 사건 이송
- '23. 11. 2. 범행 수법, 피해금의 흐름 분석하여 전국 총 23건의 기소중지 등 처분 사건이 동일조직 범행임을 확인
- '23. 11. 9.~27. 전국청에서 사건 이송받은 후 추가 범행에 대한 조사 및 피의자 2명 추가 인지
- '23. 11. 29. 피고인들 각 불구속 기소

### Ⅲ

## 수사결과 및 의의

### 1. 단발성으로 종결된 사건들을 재수사하여 “보이스피싱 조직범죄” 규명

- 이번에 재수사하여 일괄 기소한 사건들은 '14. 9.경부터 '18. 1.경까지 23명의 피해자들이 각자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으나, 개별적으로 수사되어 범인이 특정되지 못한 채 전국 18개 검찰청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기소중지 등 처분되었던 사건들임
- 재수사를 통해 위 사건은 모두 태국 치앙마이 등지에 콜센터 등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인 일명 '최사장 조직'의 공동범행으로서 전형적인 제4세대형 조직범죄\*인 것으로 확인됨

\* 조직범죄는 속칭 '조폭'과 같은 전형적인 1세대형에서 부동산 시장에 진출한 2세대형, 주가조작 등 금융시장 진출 영역인 3세대형까지 변화되어 왔는데, 제4세대형은 2010년대 이후 등장한 형태로 '형태와 구성에 관계없이 모든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구조화된 범죄집단'(보이스피싱, 온라인 도박, 불법사금융, 전세사기 조직 등)으로 정의될 수 있음

[2023. 12. 1.자 대검찰청 보도자료 참조]

- 일명 '최사장 조직'은 태국 등지에서 범행 대상자의 DB를 수집하고 범행 수익을 관리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'최사장'(총책)을 중심으로, 조직원들에게 DB를 나눠주고 실적을 취합하여 보고하는 '관리자',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일명 '콜센터'의 팀장 내지 팀원인 피고인들,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등을 수거하는 '수거책' 등으로 구성된 범죄집단임

### 2. 축적된 검찰 데이터베이스를 수사에 활용

-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(KICS)에는 판결문 및 과거 사건처리결과가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·공유되고 있고, 2010년대 이후 소위 '보이스피싱' 범죄 사례가 축적되어 왔음

- 검찰은, ①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법을 분석한 후, ② 위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유사수법(특정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저리 신규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편취 등)의 사건들을 선별하고, ③ 계좌 분석을 통해 해당 사건들의 피해금원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재분석한 결과 같은 조직으로 금원이 흘러간 사실을 확인하여 외견상 무관해 보였던 23건의 사건이 동일한 조직의 공동범행임을 규명하였음
  - 검찰은 추가 피해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과거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(KICS)에서 범인이 특정되지 못한 채 종결된 사건들을 전면 검토함으로써 사건이 발생한 지 9년이 경과한 '14. 9.경 피해의 진범까지 확인할 수 있었음

※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임

### 3. 사장될 뻔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종국 처분으로 피해 회복에 기여

-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피해신고가 있더라도 범죄집단을 즉시 검거하기 어렵고, 이에 따라 피해 발생과 조직원들 검거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
- 이번 분석을 통해 피해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(5년~9년)이 경과한 사건들의 범인을 특정하였을 뿐만 아니라, 피해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된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수사경과와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

## IV

### 향후계획

- 대전지검은 보이스피싱 범죄 등 서민들을 울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미제로 종결된 과거 사건이라 하더라도 끈질기게 재추적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,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음 ☑